

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025
----------	------

제출년월일 : 2002. 1. 21.
제 출 자 : 안 산 시 장

제안이유

- 지방세 감면 관련 법령이 개정되고 동 조례 개정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동 조례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 가. 동 조례의 설치 목적을 보완함 (안 제1조).
- 나. 전염병예방법의 개정 내용에 맞추어 음성나환자집단촌의 명칭을 한센정착 농원으로 변경함 (안 제5조).
- 다. 등록문화재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경감방법을 명확하게 함 (안 제10조제2항).
- 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31조가 삭제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리 함(안 제13조).

개정조례안 : 별첨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관계법령 발췌서 : 별첨

- 지방세법 제7조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사전예고결과 : 의견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02. 1. 21. ~ 2002. 1. 31

기타 참고사항

- 지방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달(경기도 세정 13430-13139, 2001.12.13)

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의하여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시세의”를 “따라 시세의”로 하고, “지역사회”앞에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를 삽입한다.

제5조의 조명 “음성나환자집단촌 지원을 위한 감면”을 “한센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으로 하고, 동조의 본문중 “음성나환자집단촌”을 “한센정착농원”으로 하며, “나환자”를 “한센환자”로 하고, “집단촌안”을 “그 농원안”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중 “종합토지세”를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산물생산단지 지정 신청서에 첨부한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참여자 및”을 삭제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소관 실·과		시 세 과
입 안	실·과장 직위·성명	시세과장 이 성 운
	담당·팀장 직위·성명	세정담당 원 운 희
자	담 당 자 성명·전화	배 순 철 (행정 2191)

신 · 구조문대비표

현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상 기타 사유로 인하여 <u>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u>을 규정하여 <u>〈삼 입〉</u>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u>따라 시세의</u>----- ----- ----- <u>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u> -----</p>
<p>제5조(음성나환자집단촌 지원을 위한 감면) <u>음성나환자집단촌에 거주하는 나환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집단촌안의 주거용 부동산(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것에 한한다) 및 축사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u></p>	<p>제5조(한센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 <u>한센정착농원-----한센환자----- ----- 그 농원안 --</u></p>
<p>제10조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생략) ② 문화재보호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u>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u></p>	<p>제10조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 ----- <u>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u>-----</p>
<p>제13조(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u>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와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산품 생산단지 지정신청서에 첨부한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참여자 및 농수산물가공산</u></p>	<p>제13조(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 ----- <u>〈삭 제〉</u>-----</p>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업육성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가공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에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 ----- ----- ----- ----- ----- ----- ----- ----- ----- -----</p>
<p>② (생략)</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생략)</p>	<p>③ (현행과 같음)</p>